

신차교환서비스보장 비용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

□ 약 관

제1절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4-1조(총 보상한도액의 설정)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제9조(보험금의 청구시기)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3조(양도)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6조(청약의 철회)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8조(계약의 무효)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0조(조사)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제27조(계약의 해지)
- 제28조(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31조(보험료의 환급)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2조(분쟁의 조정)
- 제33조(관할법원)
- 제34조(소멸시효)
- 제35조(약관의 해석)
-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38조(개인정보보호)
- 제39조(준거법)
-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약관

1. 신차교환 서비스 보장 특별약관
2. 긴급견인 서비스(전기차) 보장 특별약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참고 >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제1절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사이에서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비용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으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 또는 기타 약정된 문서 등에 기재된 차량(이하 ‘보험의 목적’ 또는 ‘보장차량’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행사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1조(총 보상한도액의 설정) 각 특별약관별로 회사가 지급하는 총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된 Loss Cap 손해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용어의 정의

Loss Cap 손해율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정산보험료 포함) 대비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지급준비금 포함)의 비율로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손해율)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Loss Cap 손해율 =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지급준비금 포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정산보험료 포함)] × 100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
2.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견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다만 증권에 별도로 기재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3. 회사의 사전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수리
4.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
5. 사고발생 후 30일 이후에 통보된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보장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 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위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보험금지급 또는 보상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제8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장차량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보장차량의 등록사항에 관한 서류
 4. 기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서류
-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보험금지급 또는 보상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비서류로 대신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시기) 이 약관에 의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다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보장차량이 상호 협의된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경과하지 않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3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를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 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청약시점에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을 통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제18조(계약의 무효)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

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또는 보험료의 전부나 회사와 계약자간에 이미 합의된 보험료의 일부)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할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8조(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 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 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

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6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8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9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차교환서비스 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행사기간 중 판매한 자동차 (이하 ‘보장차량’ 이라고 합니다)의 출고당시 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행사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의미하며, 이하 ‘차량’ 이라 합니다)를 구입 또는 금융계약(리스/렌탈/할부)을 체결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 피보험자가 해당 사고 차량을 신차(동일차종, 동일모델)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비용(이하 “신차교환비용” 이라 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고객이 피보험자로부터 구입 또는 금융계약(리스/렌탈/할부)을 체결한 차량이 보험기간 중 타인에 의한 자동차 대 자동차(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정의에 따릅니다)사고(사고가 반드시 경찰서에 보고되어 가해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쌍방과실인 경우 피보험자 고객의 과실이 50%이하라는 사실이 경찰서 및 보험사 사고확인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만 적용되며 적재물에 의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를 당한 경우
2. 피보험자 고객의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이 차량기준가격의 30%이상 발생한 경우
3. 피보험자의 고객이 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일차종, 동일모델의 신차로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신차교환보상비용은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1. 신차교환비용이란 고객이 피보험자의 행사기간 중 차량구입(또는 신차구매 금융계약)시점에서의 차량판매가격과 보험사고 차량의 중고차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사고차량의 매각은 피보험자의 공매 혹은 회사가 인정하거나 지정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합니다.
2. 위 1호의 차량판매가격은 피보험자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피보험자의 고객이 행사기간 중 차량 구입시점에서의 신차판매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옵션가, VAT 등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3. 위 1호의 중고차 판매가격이란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고객이 차량을 원상회복하여 신차교환을 신청했을 때의 해당 차량 중고차 판매가격을 말합니다.
4. 위 3호의 원상회복이란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수리로 기능상, 외관상,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합의한 전국 지정 정비고장 및 정비센터 혹은 자동차보험회사가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신차교환을 위해서는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고객이 사고발생 이후에 타인의 보험과 자신의 보험 혹은 자비

제2절 특별약관

로 차량을 사고 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신차교환은 서비스가입 차량 1대당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용어의 정의

1. 행사기간: 피보험자가 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판매기간(또는 마케팅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2. 차량기준가격: 차량기준가격이란 사고차량의 수리비용 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차량구매시점의 자동차제조사 홈페이지 및 자동차 제조사 공식 안내문에 명기된 사고차량의 원차량가격을 말합니다.(차량기준가격에는 취득 관련 제세금은 제외합니다. 차량할인 금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차량할인금액은 포함하며, 차량판매시 선택(옵션)품목 또한 포함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자(이하 '피보험차량관리자' 라 합니다) 단독으로 행해졌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차량관리자의 종업원, 임원, 협력자, 수탁자 또는 승인된 대표자에 의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행한 시가행위, 고의 또는 부정적으로 인한 행위.
2. 신체상해(사망포함),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또는 모든 재물 손해
3. 보험금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생된 비용.
4.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
5.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지역에서의 파업, 직장폐쇄 또는 근로방해,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중인 자에 의한 손실, 영업의 중지 또는 지연.
6.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차량제작자가 권고한 기본 유지관리 방안을 위배하여 발생한 사고

※ 용어의 정의

기본 유지관리방안이란 제작자가 권고한 각종 소모품 및 윤활유의 적절한 교체시기를 2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

8. 도난사고 및 침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용어의 정의

1. 도난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의 도난을 포함합니다.
2.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지만 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9. 차량의 판매수수료 및 제세금. 다만, 수리된 차량의 매각,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차량제작자의 생산을 리콜로 사고차량의 교환 및 보상을 이행한 경우
11. 차량의 성능보증과 관련되어 사고차량의 교환 및 보상을 이행한 경우
12. 차량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사고차량의 교환 및 보상을 이행한 경우
13. 차량 전부손해사고

※ 용어의 정의

전부손해사고 : 전부손해사고란 피보험자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점의 중고차 시세를 의미하며 중고차 시세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가액평가표를 기준으로 회사가 산정합니다.

제4조(보험가입 대상범위) 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당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보험가입대상 범주에 해당하는 '보장대상 서비스 유효계약' 대상차량의 전부에 대해 이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일부분을 선별하여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5조(기록의 열람) 계약자(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가입된 모든 보장대상 서비스에 대하여 근거문서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하며, 회사가 서면으로 관련 기록 혹은 전산 data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피보험자) 준수사항)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점에 약관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서비스계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된 서비스계약서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피보험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서비스 가입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자는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료의 환급) 보통약관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및 제31조(보험료의 환급)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와의 계약을 맺을 때 서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개별 보험목적물의 감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긴급견인 서비스(전기차) 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행사기간 중 판매한 전기자동차 (이하 '보장차량' 이라고 합니다)의 출고 당시 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행사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의미하며, 이하 '차량' 이라 합니다)를 구입 또는 금융계약(리스/렌탈/할부)을 체결한 고객이 해당차량의 아래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별로 1일당 1회에 한하여 총 2회 100km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 또는 정비소까지 견인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00km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

1. 고전압배터리(리튬이온전지 등)의 방전의 방전으로 인해 자력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공조장치를 모두 끄고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등)
2.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지역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4. 해당차량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6.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자(이하 '피보험 차량관리자' 라 합니다) 단독으로 행해졌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차량관리자의 종업원, 임원, 협력자, 수탁자 또는 승인된 대표자에 의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행한 시가행위, 고의 또는 부정적으로 인한 행위.
7. 보험금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생한 비용.
8.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

9.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지역에서의 파업, 직장폐쇄 또는 근로방해,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중인 자에 의한 손실, 영업의 중지 또는 지연.
10.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1. 차량제작자가 권고한 기본 유지관리 방안을 위배하여 발생한 사고

※ 용어의 정의

기본 유지관리방안이란 제작자가 권고한 각종 소모품 및 윤활유의 적절한 교체시기를 2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

12. 도난사고 및 침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용어의 정의

1. 도난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의 도난을 포함합니다.
2.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지만 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가입 대상범위) 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당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보험가입대상 범주에 해당하는 '보장대상 서비스 유효계약' 대상차량의 전부에 대해 이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일부만을 선별하여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5조(기록의 열람) 계약자(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가입된 모든 보장대상 서비스에 대하여 근거문서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하며, 회사가 서면으로 관련 기록 혹은 전산 data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피보험자) 준수사항)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점에 약관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서비스계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된 서비스계약서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피보험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서비스 가입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자는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료의 환급) 보통약관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및 제31조(보험료의 환급)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와의 계약을 맺을 때에 서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개별 보험목적물의 감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보

험료를 환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